

환 경 부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합천군

관 련 자 ① 합천군 ○○면사무소(전 ○○○○사업소) 지방○○주사(전 지방○○주사보) ○○○

② 합천군 ○○과(전 ○○○○사업소) 지방○○주사(전 지방○○주사보) ○○○

내 용

지방○○주사 ○○○은 2012. 1. 25.부터 2013. 1. 27까지, 지방○○주사 ○○○은 2013. 1. 28.부터 2014. 12. 31까지 ○○○○사업소에서 “○○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 조사용역”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0.04-161-14호) 제12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계약이행상황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합천군 ○○○○사업소는 시설연장 47.9km의 “○○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 12. 29. (주)○○○○과 총공사부기금액 7,178백만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¹⁶²⁾하여 2016. 11. 16.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0. 11. 22. (주)○○○○○○○○외 1개사와 “○○·○○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용역부기금액 1,199백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¹⁶³⁾하여 시행하였으며

동 사업의 하수관로 품질검사를 위하여 “○○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을 2011. 3. 22. ○○○○(주)와 총용역부기금액 226백만원으로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¹⁶⁴⁾하여 하수관로 CCTV조사 및 수밀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과품을 제출받아 2차례에 걸쳐(2012. 2. 23, 2013. 5. 9) 용역을 준공하였고

2014. 4. 4. (주)○○과 총용역부기금액 185백만원으로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¹⁶⁵⁾하여 하수관로 CCTV조사 및 수밀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과품을 제출받아 2차례에 걸쳐(2014. 6. 21 716,57천원, 2015. 2. 25 43,499천원)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공사잔여분 변경계약에 따라 2016. 11. 16. 준공예정으로 잔여구간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162) 계약금액 7,178백만원, 계약기간 2010. 12. 29.~2013. 6. 27.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6. 도급공사비 8,405백만원, 계약기간 2010. 12. 29.~2016. 11. 16.으로 변경계약을 체결

163) 계약금액 1,199백만원, 계약기간 2010. 11. 25.~2013. 11. 23.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2. 기술용역도급비 1,976백만원, 계약기간 2010. 11. 25.~2016. 11. 23.으로 변경계약을 체결

164) 계약 금액 226백만원, 계약기간 2011. 3. 25.~2013. 6. 27.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7. 기술용역도급비 263백만원, 계약기간 2011. 3. 25.~2013. 6. 27.으로 변경계약을 체결

165) 계약 금액 185백만원, 계약기간 2014. 4. 7.~2016. 4. 6.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6. 기술용역도급비 151백만원, 계약기간 2014. 4. 17.~2016. 11. 16.으로 변경계약을 체결

정부합동감사 기간(2016. 11. 14~2016. 11. 30) 중 용역 준공 당시 계약상 대자가 제출한 준공도서 및 준공검사와 관련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1. 하수관로 품질확인 용역 대가 지급 부적정

합천군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성과품을 확인한 후 준공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수밀시험 11개소를 미 실시하고 CCTV조사 197m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상 대자에게 하수관로 품질검사 미 실시 부분에 대한 대가 약 27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하수관로 품질확인 대가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단가	준공 내역		계약 이행		과다지급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밀시험	132,419 ~184,179	571개소	88,023,556	560개소	86,591,248	1,432,308
CCTV	2,533 ~3,306	18,737m	52,865,637	18,540m	52,214,355	6,51,282
간접공사비	25.83%	1식	36,390,807	1식	35,774,640	616,167
합 계			177,280,000		174,580,243	2,699,757

※ 합천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용역 준공처리 절차 부적정

합천군 ○○○○사업소는 “○○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 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나, 용역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시설공사 책임감리업체의 감리자가 용역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용역계약 내용의 일부가 미이행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합천군 “○○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 준공 부적정과 관련하여 지방○○주사 ○○○과 지방○○주사 ○○○은 각각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합천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하수관로 품질검사(수밀시험 및 CCTV조사) 미실시 구간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청구·수령한 용역업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대가 회수 및 벌점 부과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람

②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